

당진시 고시 제2016- 110호

##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07. 06.

### 당진시장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의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이하 “낙시어선업자”라 한다)와 선원 및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이하 “낙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항해 장비를 설치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야간항해 가능으로 어선검사증서상 야간운항이 가능한 낚시어선은 출·입항 기준으로 하절기(4.1~10.31) 04:00~20:00까지, 동절기(11.1~3.31) 05:00~19:00까지로 하며, 다른 법령에 항해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

**제4조(운항횟수)**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영업하는 행위의 운항횟수는 1일 2회로 제한한다. 단, 해상좌대낚시터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단지 승객을 해당 낚시터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낚시어선업 행위는 당일 입·출항을 하여야 하며 야영하면서 낚시어선업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해사안전법, 항만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의 법률(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충청남도 해상을 벗어난 구역(경기도·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제외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무인도서, 갯바위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할 수 있으나 갯바위는 난지섬 부근으로 제한한다.

단, 1회차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1회차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남아있을 경우 2회차 승객수는 낚시장소에 남아있는 승객수와 2회차 승객수를 합하여 승선정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조(안전운항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과 안전의무를 준수할 것

2. 정원초과승선 금지,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에 승선원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 착용법을 출항전 교육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시킬 것(별표1 참고)
3.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영업통제구역 및 위험한 장소등에 낚시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항 신고의 이행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연락체계(선주·선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를 유지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것
5.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할 것
6. 다른 시·군 관할수역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명령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
7.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 승객들이 생산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와 휴지통을 선내에 비치할 것
8. 강풍, 풍랑, 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해상에서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밖의 출입항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을 하지 말 것
9. 음주상태 및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말 것
10.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 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11.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서, 갯바위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태우고 입항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4.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금지 기간,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5.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될 경우 낚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6.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7. 해상사고(추락 등) 예방을 위해 지나친 음주, 가무행위

③ 낚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낚시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의 보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및 충돌·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시 및 인접시장·군수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후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전 종전 「낚시어선업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제정된 「낙시어선의 안전운항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및 낙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당진군 고시 제 2008-100호, 2008.5.21., 당진시 고시 제2013-236호, 2013.4.1., 제 2016-039호, 2016.3.8.)은 폐지한다.

[별표 1]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1. 게시판의 제작기준

가. 재질: 아크릴 등 색이 변하지 않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검은색

2) 바탕: 승선정원 - 흰색

승객 준수사항 - 노란색

다.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게시판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  
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게시방법의 예시)와 같  
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판의 부착장소

해당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선정원 : 00명

승객 준수사항

※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  
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3.  
.

승선정원 : 00명

낙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 고시한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① 낙시어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장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낙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4.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만의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5. 낙시장소에서 낙시행위를 하는 중에 기상이 악화 될 경우 낙시어선 선장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6.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7. 해상사고(추락 등) 예방을 위해 지나친 음주, 가무행위

② 낙시어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낙시어선 승객은 승선할 낙시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